

「사천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」 심사보고

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정례회
제8차 산업건설위원회(2003. 12. 18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3. 11. 28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3. 11. 28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42호)
- 다. 2003. 12. 18 :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건축과장 안점판)

가. 제안이유

- .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무를 시·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 받아 처리하던 것을 2002. 12. 30일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시·군·구로 이양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.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 - .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. 다만,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2). 광고물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
 - (가) 심의위원회 구성 (안 제3조)
 - (나) 위원회 심의사항 (안 제4조제1항)
 - .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
 - .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
 - .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

(3). 안전도검사 관련사항 (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)

- . 안전도검사는 안전도 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.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. 위탁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, 위탁기간,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

(4).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 및 안 제13조)

- .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 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. 시장이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, 관계서류의 제출시기, 위탁받을 자의 임무,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

(5).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·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 (안 제14조)

- .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,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,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.

(6).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·절차에 관한 사항 (안 제15및 안 제16조)

- .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, 별표 6과 같다.

3. 법적 근거

- .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
- .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영태)

- . 동 조례안은 상기 제안이유와 같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무를 시·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아 처리하던 것을 2002, 12, 30 법령개정으로 시·군·구로

이양됨에 따라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 조례표준안에
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
제정하는 것으로,

- . 관련 상위법령과의 관계,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이행여부, 주민의견
수렴 사항, 입법체계 등 시행 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
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: 없음